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떠한 이득이나 손실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산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분산투자 관련위험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대상 국가의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국가 또는 설립 국가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 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 험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정책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펀드의 대량 매입과 환매에 관련되는 비용을 당일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장기 투자자들을 희석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특정일에 투자자의 거래 금액 및 유형에 따라 기준가가 인위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인위적인 조정에

		따라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가격조정정책으로 인한 기준가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 감독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달리 투자했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오후 5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6 영업일(D+5)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7 영업일(D+6)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fidelity.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 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투자자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동일 투자신탁내 전환: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에 한합니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 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 년이 경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 전환대상 투자신탁간 수익증권의 전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피델리티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3-0901) / 인터넷 홈페이지 : www.fidelity.co.kr 환헤지 관련 업무 위탁운용사: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이 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종전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FIL Investments International 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함.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60 조 좌
효력발생일	2026 년 07 월 29 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5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 <u>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u> ’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 수수료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이 집합투자기구는 보수체감(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며, 산정일 현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C2, C3, C4)은 미설정이므로 위 시점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 약 8 개월
		수수료 후취	일정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이 집합투자기구는 보수체감(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며, 산정일 현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C2, C3, C4)은 미설정이므로 위 시점은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5)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 약 8 개월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PRS 수익증권 및 종류 S-I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게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1~C5)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계좌, 특정금전신탁, 법 제 105 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RS)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기관투자자, 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각 종류(클래스)별 세부 가입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